

장학금 규정

제정 1980. 3. 1. 규정 제 41호
 개정 1982. 4. 23. 규정 제 95호
 개정 1982. 10. 7. 규정 제126호
 개정 1983. 5. 7. 규정 제167호
 개정 1983. 12. 13. 규정 제183호
 개정 1985. 10. 8. 규정 제228호
 개정 1989. 6. 13. 규정 제283호
 개정 1998. 11. 4. 규정 제430호
 개정 2000. 3. 1. 규정 제490호
 개정 2001. 8. 6. 규정 제537호
 전문개정 2004.1.14. 규정 제610호
 개정 2005. 8. 31. 규정 제642호
 개정 2007. 7. 9. 규정 제686호
 개정 2007. 11. 22. 규정 제693호
 개정 2008. 4. 17. 규정 제710호
 개정 2008. 11. 25. 규정 제733호
 개정 2012. 6. 14. 규정 제845호
 개정 2014. 2. 11. 규정 제891호
 개정 2015. 1. 29. 규정 제911호
 개정 2017. 5. 30. 규정 제960호
개정 2019. 8. 27. 규정 제10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54조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11.25., 2017.5.30.>

제2조(적용 범위)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5.30.>

1. 연구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2008.11.25., 2017.5.30.>
 2. 근로장학금: 대학원의 각종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005.8.31., 2012.6.14., 2017.5.30.>
 3. 등록금면제장학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장학금 <신설 2007.7.9., 2008.4.17., 2017.5.30.>
- 가. 「대학원 학칙」 제10조의 정원 외 입학대상자<2019.8.27>
- 나. 내국인 신입생 성적 우수자
- 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계 곤란자
- 라.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자

5-0-8. 장학금 규정

4. 기탁장학금: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특별사업기금 중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신설 2014.2.11., 2017.5.30.>
5. 교외장학금: 각종 외부단체(또는 개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신설 2017.5.30.>
6. 해외학문후속세대양성장학금: 「대학원 학칙」 제10조의 정원 외 입학대상자 중 외국인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 단,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9.8.27.>

제4조(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내에 있는 자로 한다. 단, 근로장학금은 재학연한 내로 하며, 기탁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출연자의 취지에 따라 수료생도 가능하다. <2007.11.22., 2008.4.17., 2008.11.25., 2014.2.11., 2017.5.30.>

제5조(신청) 장학금 종류별 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5.30.>

1. 연구장학금: 희망자는 매 학기 초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전공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갖추어 지급대상자를 학부장 명의로 추천한다. <2008.11.25., 2017.5.30.>
2. 근로장학금: 희망자는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부 조교의 경우에는 매 학기 시작 전 학부장이 대상자를 추천한다. <2017.5.30.>
3. 등록금면제장학금: 제3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매 학기 시작 전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증빙 자료를 교학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5.30. 2019. 8.27.>
4. 기탁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공고에 따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자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7.5.30.>

제6조(선정) 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5.30.>

1. 연구장학금: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2. 근로장학금: 교학처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정한다.
3. 등록금면제장학금: 매 학기 입학 및 등록 기간 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4. 기탁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교학처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정한다. 단, 출연자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7조(중복수혜 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수혜를 금한다. 단, 제3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의 장학금은 예외로 하되, 기탁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은 출연자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017.5.30.>

제8조(장학생 준수사항) 장학생은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정진하며, 타의 모범이 되

어야 한다. <2008.11.25., 2014.2.11., 2017.5.30.>

제9조(신청 및 지급 제한) 대학원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을 제한하며, 장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008.11.25., 2014.2.11., 2017.5.30.>

1. 「대학원 학칙」 제51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2017.5.30.>
2. 휴학한 경우
3. 대학원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2017.5.30.>

부 칙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5-0-8. 장학금 규정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의 면제장학생 가운데 제7조 제2항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9학년도 제1학기 등록 시부터 면제장학금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8.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장학금 지급 신청서

학 부			전 공		
학 번		성 명		차 수	

▶ 신청사유 :

위와 같이 20 학년도 제 학기 ()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서

학 부	전 공	학 번	성 명	비 고

▶ 추천사유 :

위의 학생을 20 학년도 제 학기 ()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학부장 (인)